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6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2.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2. 26.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12. 2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23.12.14.)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1) 3급: 0명 → 1명 (증1명)

2) 4급: 5명 → 4명 (감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복지지원과-48215(2023. 12. 18.)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생략(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2) 규제심사
- 3) 부패영향평가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별표3 개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65	20	142	28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60	20	116	27	194
3급	1	1				
4급	4	3		1		
5급	44	19	3	6	2	14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 12. 14.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집행부가 제안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2. 27. 원안가결